

제 210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

2017. 9. 14.

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64
----------	------

2017. 9. 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7.6.27.
- 나. 회부일자 : 2017.9.1.
- 다. 상정일자 : 2017.9.7.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고재식 행정국장

나. 개정이유

상위법의 개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, 그 밖에 법규 형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- ‘평생교육의 진흥’에 대한 규정을 정비·신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(안 제3조),
- 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촉(안 제5조),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- 우리구 여건을 반영한 조항의 신설·보완 및 시행규칙 폐지

-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(안 제3조)

-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·보완하고 임기 및 위촉해제, 의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함(안 제4조 ~ 안 제9조)
 -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 및 신설함(안 제11조, 제12조)
 -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의 내용 중 일부는 조례에 수정하여 반영토록하고 시행규칙은 폐지
- 의원발의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(안)」의 일부내용 반영
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협회에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여 ‘평생교육협회’가 ‘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’의 기능을 대신 하도록 함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『평생교육법』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2017.6.9. ~ 6.29. (결과 : 의견 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정수용)

- 의안번호 제1364호 『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』은 2017년 6월 2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『평생교육법』 개정 사항과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고, 의원발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『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』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,

- 안 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, 제5조(구성), 제13조(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,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우리구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·보완하였음. 또한 『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』의 내용 중 일부 규정을 조례에 수정하여 반영토록하고 시행규칙은 폐지하였음.
- 안 제5조(평생교육협의회 구성)에서는 의원발의 『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(안)』의 일부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에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여 ‘평생교육협의회’가 ‘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’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으로

- 상위법의 개정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

- 조례안 제4조(설치 및 기능) 제2항 5호를 6호로 수정하고,
- 조례안 제4조(설치 및 기능) 제2항 5호를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 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”으로 신설하며,
-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신 · 구조문대비표 (제2장 평생교육협약외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평생교육협의회 설치)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5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.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학습관(이하 “평생학습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	<p>제4조(설치 및 기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생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.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.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.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	<p>제4조(설치 및 기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생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.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.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u>5.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</u> <u>6.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